

技術開發促進法の改正要旨 및 運用方案



朴 肯 植

<科技處 技術開發官·理博>

① 民間企業에 있어 技術開發의 重要性

우리나라 産業技術은 그간 工業化過程에서 先進技術을 積極導入, 消化하고 自主의 技術開發能力을 涵養하여 오면서 急速한 發展을 이룩하여 中進工業國에서 先進國으로 跳躍하는 段階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4次 5個年計劃期間中에 工業立國의 基盤을 完成하고 80年代初에 先進工業國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高度한 産業技術의 自主的 開發擴大가 切實히 必要하며 産業의 國際競爭力을 強化함에 있어 民間企業 스스로가 技術개발에 主役이 되고 技術개발이 企業에 있어서의 가장 重要한 經營戰略으로 設定되어 新製品, 新技術開發에 注力해야 할 것이다.

특히 企業의 技術개발의 重要性을 例示하면 最近 尖端電子工業分野에 있어서는 그 製品壽命이 3年~5年으로 短縮되어 가고 있어 生産工場이 바로 研究所의 形態로 運營되고 연구소의 高級頭腦가 바로 生産要員의 役割을 하는 새로운 研究集約型 頭腦産業이 一般化되고 있는 實情에 비추어 企業의 技術개발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욱 절실하다 아니 할수 없다.

政府는 앞으로 産業高度化에 對應한 科學技術開發을 위해 4次 5개년계획으로 81年度에는 GNP의 1.5%線을 投資하고 이중 過半을 民間産業界가 負擔케함으로써 先進國型的 企業主導的 技術開發體制를 이룩하여 나갈 것이다. 따라

서 이를 制度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技術開發促進法을 改正하여 企業의 技術開發活動에 대한 支援體制를 擴大強化하고 今年부터는 그 實施를 本格化해 나갈 것이다.

② 改正된 技術開發促進法 및 同施行令骨子

政府는 民間企業의 자주적 技術개발을 誘導 助長하기 위하여 1972年 12월에 技術개발촉진법을 制定 施行하고 이 법에 의하여 技術개발을 行하는 企業에 대하여는 租稅 金融上의 優待等 支援措置를 講究하여 왔으며, 이러한 지원조치에 따라 技術개발을 위해 積立使用하고 있는 技術開發準備金은 77年 12月末現在 143個 業體에서 總 158億원에 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법 施行결과 制度 및 行政上의 補完이 必要하게 되었으며 우리 經濟의 成長과 技術需要의 확대에 따른 開發體制의 뒷받침을 위해 지난해 末에 同法律을 全面 改正하고 금년들어 그 施行令을 改正 補完함으로써 앞으로 産業技術開發活動을 새로운 次元에서 積極 支援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 하였는바 그 主要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技術開發準備金 積立對象 및 積立限度額의 擴大調整

技術開發準備金 積立對象은 從來는 製造業者 技術導入者에 限定되었으나 이를 製造業, 鑛業, 建設業, 技術用役業, 情報産業, 軍需業體로 확대하여 主要産業 및 頭腦産業, 防衛産業등 보다 많

은 기업에서 자주적 기술개발활동을 遂行케 하고 準備金の 積立限度額도 當該年度 所得金額 100分の 10에서 100분의 20으로 上向調整함으로써 민간기업의 技術開發投資의 大幅 擴大와 稅制上의 지원조치를 強化하게 되었다.

또한 重要戰略産業分野企業에 대한 기술개발의 義務化措置로서 技術導入者로서 年間技術導入代價 5萬弗 以上인 業體와 機械, 造船, 化工, 金屬 및 電氣電子工業分野의 企業中 從業員 500人 以上인 업체 또는 資本金 10億원 以上인 업체와 中小企業型 專門機械工場事業者 등에 대하여도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이 분야에 있어서 자주기술 개발을 積極誘導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2. 技術開發準備金 使用範圍의 擴大効率化

기술개발준비금의 使用範圍를 증대 기술개발(技術訓練, 技術情報包含에서 導入技術의 消化, 改良, 研究施設, 中小企業技術指導, 特定研究機關에 대한 出捐, 特許出願料, 研究組合 分擔金 등으로 크게 확대하고 그 使用方法에 있어서도 企業自體開發에 있어서는 自體研究施設을 통한 新技術開發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研究人力 및 연구시설이 不足하여 자체개발이 不可能하다고 判斷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特定研究機關에 委託 또는 출연하여 共同으로 개발하는 方向으로 이를 유도하는 한편 동 준비금의 使用期間內(2年) 技術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未使用分에 대하여는 積立額과 課稅額의 利子相當額을 追徵한 金額을 益金에 算入케 함으로 技術사용을 效率의으로 促進하게 될 것이다. 또한 同法에서는 重要戰略分野事業者중 자체연구시설이 未備한 者에 대하여 연구시설의 設置를 勸告하고 이를 履行하지 않는 企業에 대하여는 租稅, 金融 및 其他 保護措置를 排除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의 擴充을 圖謀하고자 한다.

3. 技術開發을 위한 資金支援의 擴大

技術開發促進法 第6條에 의하면 정부는 本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 사용하는 자와 新技術企業化事業者, 試驗研究用物品購入과 연구시설을 建設하는 자에 대하여는 産業育成을 위하여 造成된 長期低利資金중 일부를 기술개발을 위하여 優先의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莫大한 資金이 필요한 연구시설의 확충과 新技術企業化支援을 촉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制度的措置로서 정부는 年間 50억원 規模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4. 國產新技術製品製造者에 대한 保護

國產技術製品은 國內에서 完成된 製造工程과 그 公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하고, 그 保護措置로서 연구개발에서 企業化段階까지 투자된 資本의 回收 및 適正利潤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最少 1年 以上, 最長 5年 以內에서 類似製品의 輸入規制 및 同一品目の 重複製造規制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工業化 試驗完了段階에 科學技術處長官에게 申告하게 하고 있으며 신고된 國產新기술제품에 대하여는 同製品의 技術性, 經濟性 등에 대한 專門家 및 關係部處의 意見을 들어 그 보호의 必要性 與否를 決定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또한 보호받은 國產新기술제품의 法的 品質保障에 필요한 改善命을 발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보호조치를 取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호조치로 因한 產品의 質의 低下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取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신기술의 企業화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國內保護必要技術을 미리 告示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된 기술에 대하여는 技術導入과 外國技術用役을 承認하지 않도록 하는 內容도 漸次的으로 強化 施行해 나갈 것이다.

5. 技術輸出에 대한 支援

國內産業技術開發이 本格化되어 감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도입을 主로하던 우리의 處地에서 이제 우리는 工業所有權, 노우하우, 엔지니어링 등 기술의 輸出을 적극 지원하여 앞으로 플랜트 수출과 함께 기술 그 자체를 商品輸出化하는 단계로 發展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이를 제도화하였다. 그 主要內容은 技術輸出契約을 締結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의 內容 및 提供方法, 기술수출의 代價 및 受取方法, 期待效果등이 포함된 技術輸出計劃을 미리 科學技術處長官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된 기술수출계획에 대하여는 關係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支援要請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기술수출이 國內輸

技術開發準備金の 使用基準

技術開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企業의 自體技術開發을 위한 研究部署 要員의 人件費, 材料費 및 試驗研究費와 工業化 中間試驗 및 示範 製作에 必要한 經費 2. 研究機關 또는 教育法에 依한 大學이나 個人에게 委託하는 技術開發 用役費 3. 其他 技術開發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經費로서 科學技術處 長官이 認定하는 經費
導入技術의 消化改良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導入된 技術의 分析適用을 위한 調查研究費 2. 導入技術의 工程 改善등 改良에 所要되는 經費(裝置, 材料費 등)
技術情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內外 科學技術者의 技術諮問費 2. 科學技術關係 刊行物 購入費 3. 情報團體 加入費 및 會費 4. 科學技術關係 國際學術會議 參席費 5. 國內外 科學技術 情報獲得을 위한 經費
技術訓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自體訓練 또는 國內外 委託費 練費 2. 技術開發에 關한 세미나 開催 및 參席費 3. 國內外 技術競技大會 參加 또는 國家技術資格 檢定應試經費
研究施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研究所에 直接 供與되는 建物 購入費 2. 研究用 物品, 機資材, 裝備 施設의 設置 및 購入에 必要한 經費
中小企業技術指導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母企業의 都給企業에 對한 技術指導에 必要한 經費 2. 其他 中小企業 技術向上에 必要한 經費
特定研究機關 育成法의 適用을 對한 研究機關에 對한 出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特定 研究機關에 委託研究 用役費 2. 特定 研究機關 育成을 위한 出捐研究費
工業所有權의 出願 및 實施, 産業技術研究組合 育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內外 工業所有權 獲得을 위한 出願料 또는 特許料로 支拂되는 經費 2. 産業技術 研究組合에 納付하는 負課金

出産業에 不利한 影響을 주거나 契約條件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變更을 勸告할 수 있게 하였다.

6. 産業技術研究組合의 設立育成

技術開發能力이 脆弱한 中小企業의 技術指導를 강화할 목적으로 産業技術研究組合을 法人으로 設立할 수 있게 하고 同研究組合은 共通隘路 技術의 共同研究開發과 同種技術의 一括導入配分 및 그 成果의 管理 기술지도등을 主要事業으로 하고 同연구조합에 納入하는 分擔金은 損費로 인정하는 世제상의 지원과 그 육성을 위한 金融, 技術情報의 지원 조치등을 講究할 수 있게 하였다.

③ 運用方案

이상에 言及한 技術개발촉진법은 기업에 있어서의 技術개발과 그 성과의 企業化를 촉진하고 국내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신제품의 보호에 이르기까지 一貫된 조세금융지원을 中心으로한 지원체제를 일단 整備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同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重要 戰略産業分野의 사업자에 대한 기술개발의 義務化措置로서 기업의 자체기술개발촉진과 特定研究機關, 大德團地 및 工業基地에 設立되고 있는 專門研究機關의 活用을 통한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기업과 연구소의 紐帶를 깊게 맺어 나가고져 하는 것이다.

특히 本法의 중심이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적립 신고와 事業計劃書의 檢討는 물론 徹底한 事後 管理를 통하여 世제상의 지원이 效率的으로 뒷받침될 수 있게 關係機關(國稅廳)과 緊密히 協調하여 推進할 것이며 국산신기술제품의 保護決定 등 主要審議事項은 關係部處와 斯界專門家가 參與한 「技術開發審議委員會」를 통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이 법을 뒷받침하는 租稅減免規制法 및 關聯稅法을 계속하여 補完하는 한편 이 법이 민간기업의 技術개발 체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運用에 最善을 다 해나갈 것이다.